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

◇ 제 · 개정 이유

전기기기 공인시험 체계 유지를 위해 고시의 재검토 기한 연장 및 전문용어 정비 등을 추진하고자 함

◇ 주요내용

가. 고시의 재검토 시점을 현행 "2021.7.1 기준"에서 "2024.7.1 기준"으로 개정(제16조)

나. 어려운 용어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"권선저항 측정기"를 "권선저항(저항체를 원통 모양으로 여러 번 감아서 만든 저항)측정기"로 개정(안 별표3)

다. 기타 공인검수시험 면제신청서 문구를 현행 "제2021 - 34호"에서 "제2024 - 066호"로 변경(안 별지 제1호 서식)